

# 1. 한국 시민사회 상호대화 제출내용(예정)

## **UN Human Rights Council: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Statement delivered under Item 3**

매우 시기적절한 문제의식을 담은 이번 보고서와 특별보고관의 관련 프로젝트에 대하여 한국 시민사회는 크게 환영을 표합니다.

이 보고서 85번 문장에 따르면 "디지털 통신내용을 삭제하거나 이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요구, 요청, 조치 등은 정당한 제정 법률에 기반해야 하며, 독립적인 외부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자유권규약 19조 3항에 명시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으로서 필수성과 비례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5년 자유권위원회가 적절히 지적하였듯이,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 가입자정보의 제공은 지극히 오남용되고 있습니다. 법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견제와 균형장치가 부재하며 수사기관의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인구 5천만 국가에서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방대한 양의 가입자정보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통신자료 수집 목적을 정보주체에게도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의 알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 5백명은 최근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의 관련된 후속 활동에 대하여 또한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통신자의 신원확인이 독립적인 기관의 허가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통신을 통한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가요?
2. 가입자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해당 조문이 "사업자들이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이유 만으로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기업의 재량이라고 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수사기관의 재량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장없이 통신자들의 신원이 드러나게 되어 익명통신의 자유가 침해된 것에 대하여 누구에게 궁극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이와 비슷하게 행정기관에 의한 또는 사적 당사자에 의한 온라인게시물 삭제 관련 규정 역시 사업자에게 재량을 주는 듯한 법조문들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결국 많은 표현물에 대한 정부의 검열이나 감시가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민간기업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감시는 과거보다 더욱 은밀하며, 더 저렴하고, 더 대량으로, 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더 편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규명되지 않는다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행사는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